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사업단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329

제출년월일 : '94. 12.

제 안 자 : 안산시장

1. 제안사유

-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산물 수급조절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43만 시민의 숙원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 사업단을 설치코자 함.

2. 주요골자

- 위 치 : 안산시 이동 528번지

- 기구인력

- 단 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5급)
- 기구인력 : 1계 5명 (5급 1, 6급 1, 7급 2, 8급 1명)

- 주요업무

-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
- 시장개설, 운영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 추진

3. 참고사항

○ 경기도 지방 12200-3313('94.12.1)호로 기구인력 승인

○ 시설현황

- 건립기간 : 1994. 3 ~ 1995. 8
- 사업비 : 21,090백만원
- 부지면적 : 42,982m² (13,002평)
- 건축연면적 : 19,988m² (6,046평)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총 8개동)
- 건물구조 : 철근 콘크리트

○ 주요시설

청과동(2,180평), 수산동(1,963평), 농수산물 관련동(1,090평), 관리동 및 편의 시설(615평), 쓰레기(폐수)처리장(95평), 정곡창고(79평), 옥외 화장실 및 수위 실(24평)등

○ 예산조치 : '95년도 예산 확보

○ 조례(안) : 별첨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설치조례(안)

제1조 (설치)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위치) 사업단을 안산시 고잔동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2. 시장개설, 운영에 따른 제반 준비 사항 추진

제4조 (단장) ① 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단에 단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